

KDI,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98년 5월 18일(월) 한국개발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7일 공정위가 작성한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방안」(공정위 안은 P.15~16 참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서는 첫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지주회사가 총자산의 50% 미만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영위의 목적으로 조달한 부채를 타회사 지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공정위가 제시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수준(100%)이 과연 타당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추가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둘째,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직접상호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나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40%보다 높은 한에 있어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상 모자회사 관계에 있게 되고 30대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이미 계열사간 직접상호출자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한지는 추가검토하여야 하며, 셋째,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동시소유 금지는 금융과 비금융이 동일한 지배권하에 속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차단벽, 금융의 건전규제 등)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넷째, 지주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자회사 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상장자회사의 경우 막대한 자본금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지주회사는 직접 또는 다른 자회사를 통하여 자회사 주식을 일정수준(예컨대 50%) 이상 소유하되, 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 지분율을 일

정수준(예컨대 3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안이 원래의 안에 비해 보다 지주회사의 조기설립을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 지배목적으로 출자할 수 없다는 제한은 기본적으로 타당하지만, 사업회사인 자회사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손회사)를 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30대 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는 별도의 규정으로 2000년 3월까지 추진해 나가기로 한 만큼 이와 같은 내용을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으로 설정하기보다는 30대 기업집단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새로이 설립하는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의 해소를 기존의 일정보다 앞당겨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설정,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직접상호출자금지 및 금융·비금융의 분리 등 세 요건은 타당하다고 논의된 반면, 나머지 두 요건은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주회사의 조기설립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러한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에 대한 제약은 외국인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하고, 비상장 지주회사에 대하여서는 다수의 상장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므로 비상장 주식회사보다는 더욱 강화된 경영투명성과 엄격한 경영감시장치의 기준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 세법, 노동관련법, 파산법 등의 분야에서도 보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